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과 업 명: 연안 TAC 정착을 위한 자원조사 개선방안 마련

2. 예산과목: 26-라. '26년연안수산자원조사 / 경비 /위탁사업비

3. 추정금액: 금 301,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계약방법: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6. 용역 사업 난이도

○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26.5)에 따라, 단순 자료조사를 넘어 연안 TAC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한 고도화된 자원조사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업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적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됨

○ 또한, 도출된 결과가 즉각 연안 TAC 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방대한 연안어업의 현장 특성과 다양한 변수를 단기간 내에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등 과업 수행의 난이도가 매우 높음

7. 긴급입찰공고 사유

가. 긴급공고 근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2) 2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재정경제부)

Ⅰ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방향

1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수행

□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ㅇ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 ㅇ 2026년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나. 긴급 공고 사유

○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26.5)에 따라, 연안 TAC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전면 확대를 위한 고도화된 자원조사 체계 구축 및 정책 방향 설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본 사업의 결과물은 연안 TAC 기초자료와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자료이므로, 도출된 개선방안이 지체 없이 국가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과업 착수와 완료가 필수적임

○ 특히, 연안어업은 조업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지역별 특성이 복잡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면 방대한 조사와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즉, 내실 있고 전문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실제 과업 수행 기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27년 1월까지로 과업 기간이 지정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40일)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여 부실한 결과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 기간 보장이 필수적으로 공고기간 단축이 절실함

8. 종합의견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과업은 예산 조기집행 정책 및 효율적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공고기간의 단축에 따른 입찰불가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하고자 함

2026. 06.

작성자: 어업혁신본부 TAC관리실 연구기술 4급 장준철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인